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
----------	----------

제안년월일 : 2014년 9월 23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의 내용이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u></p>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의무) 시장과 교육감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